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41	23	1993. 10. 28	종재 김,명호

의안 「금융기관 여수신대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 여수신대출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제66조

제의취지 금융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경제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리자유화 폭을 확대하는 한편 기계수표이동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 참고사항 >

제외관계 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47조

① (생 략)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한국은행법 제65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 붙임 >

「금융기관 여수신아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 (안)	비고
제1조 ~ 제5조 (생략) (신 설)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 11. 1부터 시행한다. 2. (견고조치) 1993. 10. 31이전에 계약된 3년만기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 및 3년이상만기 상호보급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3. (가계당좌예금 이율의 예외적용) 1993. 10. 31이전에 계약된 가계당좌예금에 대한 최초 이자지급시에는 시행일(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된 경우 예금에 대한 최초 이자지급시에는 계약일)로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평균예금잔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연 3.0%를 적용한다.	- 시행일자 명시 - 시행일전에 계약된 3년만기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 및 3년이상만기 상호보급에 대하여는 종전아을 적용 - 가계당좌예금의 아을변경과 관련한 최초 이자지급방법 명시
<별 표> 수신이자 및 기타자금금의 최고율	<별 표> 수신이자 및 기타자금금의 최고율	
구분	이율	
1.	(생략)	
2. 저축예금	연 3.0% (실명의 개인에 한함)	
3. 자유저축예금	연 9.0% (실명의 개인에 한하며 1인당 5,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천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4. 가계당좌예금	연 1.0% (실명의 개인에 한함)	
5.~8.	(생략)	
9. 정기적금	연 8.5% (지방은행은 연 9.0%)	
구분	이율	
1.	(현행과 같음)	
2. 저축예금	연 3.0% (개인에 한함)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조문정비 (이하 생략)
3. 자유저축예금	연 9.0% (개인에 한하며 1인당 5,000만원이내. 다만, 이자천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	
4. 가계당좌예금	연 1.0% (개인에 한함) 다만, 3개월평균예금잔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3.0%	- 예금평잔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금리인상
5.~8.	(현행과 같음)	
9. 정기적금	연 8.5% (지방은행은 연 9.0%) 다만, 3년이상만기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3년이상만기 금리자유화

번		개		정 (인)	비	고
구	분	이	분	이	율	
10.	가계우대정기 적금	연 11.5% (실령의 개인에 한하며 계약 기간은 3년, 계약액은 1인당 1,000 만원 이내. 다만, 세금우대종합통장 으로 동 적금에 가입함에 따른 계약액 한도초과는 예외로 함)	10.	가계우대정기 적금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개인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 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 다만,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동 적금에 가입 함에 따른 계약액한도초과는 예외로 함)	- 금리자유화
11.	근로자장기저축	연 11.5%	11.	근로자장기저축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금리자유화
12.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정기적금 최고이율+2.0%포인트(다만, 지방은행의 경우 정기적금에 대한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연 8.5%, 다만, 3년이상만기의 경우 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최고이율 명시, 3년이상만기 금리 자유화
13.	상호부금	연 9.5%	13.	상호부금	연 8.5%, 다만, 3년이상만기의 경우 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3년이상만기 금리자유화
14.	주택부금	정기적금 최고이율	14.	주택부금	연 8.5%, 다만, 3년이상만기의 경우 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최고이율 명시, 3년이상만기 금리 자유화
15.~16.	(생 략)		15.~16.	(변형과 같음)		